

소 방 법 령 Ⅲ

강원도소방학교

소방서비스 헌장

우리 소방인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1. 긴급구조와 화재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소방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공 질서유지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校 訓

배움으로 先進消防

나눔으로 奉仕消防

현장으로 最强消防

반 명	
교 번	
성 명	



목 · 차

CONTENTS

제1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 장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 7

제 2 장 총 칙 / 15

제 1 절	목 적	15
제 2 절	정 의	17
제 3 절	적용제외	24
제 4 절	지정수량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24
제 5 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25

제 3 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30

제 1 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32
제 2 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44
제 3 절	탱크안전성능검사	46
제 4 절	완공검사	50
제 5 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53
제 6 절	제조소등의 폐지	61
제 7 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64
제 8 절	과징금 처분	67

제 4 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69

제 1 절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69
-------	--------------------	----

제 2 절	위험물안전관리자	70
제 3 절	탱크시험자의 등록	80
제 4 절	예방규정	85
제 5 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87
제 6 절	자체소방대	91

제 5 장 위험물의 운반 등 / 94

제 1 절	위험물의 운반	94
제 2 절	위험물의 운송	95

제 6 장 감독 및 조치명령 / 99

제 1 절	출입·검사 등	99
제 2 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104
제 3 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104
제 4 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105
제 5 절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106
제 6 절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107

제 7 장 보 칙 / 109

제 1 절	안전교육	109
제 2 절	청 문	112
제 3 절	권한의 위임·위탁	115
제 4 절	수수료	117
제 5 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18

제 8 장 벌 칙 / 119

제 9 장 부 칙 / 129

제2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 137
제 1 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 137
제 2 절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규제의 변천과정 138
제 2 장	총 칙 / 145
제 1 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145
제 2 절	용어의 정의 146
제 3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 150
제 1 절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0
제 2 절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2
제 4 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 154
제 1 절	관련 행정기관의 다중이용업 관련 사항의 통보 154
제 2 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56
제 3 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159
제 5 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반 조성 / 172
제 1 절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 172
제 2 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172
제 3 절	안전관리 기반 구축 177
제 6 장	벌 칙 / 181

01

위험물안전관리법

Gangwondo Fire Service Academy

제 1 장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이 법은 위험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다른 소방 관련법과 비교한다면, 「소방기본법」은 각종 소방행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한 법이며 「소방시설공사법」은 소방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소방관련 영업에 대한 중점적인 규제이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대상물 및 이를 이용·취급하는 물적·인적인 안전관리에 관해 규제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학습하게 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과 관계된 제반사항 중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에 대해 규제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위험물의 사용은 불가피한 반면에 화재·폭발·누출 등 각종 사고의 위험성, 사고 발생시 진압 등의 조치상의 어려움, 피해의 대규모성 및 원상회복의 불가능 등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이러한 위험물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적정·안전사용 등을 확보하여 사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물의 위험성 발로를 적정 통제하여 궁극적으로는 위험물의 각종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험물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의 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¹⁾에 의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규제에 의해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적합성·상당성·최소침해성 등의 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위험물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物的통제방식과 人的통제 방식을 균형있게 사용하고 있다. 물적통제방식으로 ‘제조소등’이라는 시설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1) 헌법 제38조 제2항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의 시설 및 용기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적통제방식으로는 궁극적으로 위험물은 사람에 의하여 이동·취급·사용되어 지는 바, 이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사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환경유해물질인 위험물의 안전확보는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확보함으로써 단순히 소방업무와 관련한 위험물의 화재·폭발 등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위험물로 인한 환경적 유해상황으로부터의 안전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1. 이 법의 제정배경

이 법의 제정배경은 먼저 소방법의 분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8년에 제정되어 2004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소방법은 크게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위험물 포함),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 등 소방관련업에 관한 사항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어 다양한 영역의 소방행정분야를 소방법 하나만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다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기타 여러 법령과도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제정이후 25차례나 개정되면서 그때 그때의 상황대응적 입법으로 인하여 법률 체계상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의 부재가 문제시 되었다.

이러한 기존 소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법을 4개의 법²⁾으로 분법하고, 기존 소방법에 규정³⁾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위험물 관리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법률 제6896호로 2003년 5월 29일 제정되었고 그로부터 1

2)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나뉘었다.

3)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5조 내지 제29조

년 후인 2004년 5월 30일 시행되었다. 또한 하위 법령으로 대통령령 제18406호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004년 5월 29일에 그리고 행정자치부령 제242호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7일 제정되었다.

2. 주요골자

이 법의 제정 당시 주요골자를 기존의 소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일정한 양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 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함(법 제6조)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의 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 대신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 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한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예방규정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의 부담을 덜어줌(법 제17조)
- 마. 종전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위험물 운반용기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소방방재청장으로 개정 '05. 8. 4)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물 유통량의 증가에 대비함(법 제20조)

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

3. 이 법의 구성

이 법 또한 대부분의 법률의 그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제명·본칙·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은 총칙규정, 본칙규정, 보칙규정, 별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기존의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3장(위험물의 취급)에 규정된 15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16개의 조문을 신설하고 나머지 조문을 정리하여 전문 7장 39조 및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내용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각 장별 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칙에서 이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제외 대상, 그리고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기준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장은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3장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4장은 위험물의 운반 등, 제5장은 감독 및 조치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보칙으로서 안전교육,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수수료,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별칙조항으로서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위반시 적용되는 행정벌의 내용과 양벌규정, 그리고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 부과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이 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6896호(2003. 5. 29 제정)
 법률 제7428호(2005. 3. 31 개정)
 법률 제7659호(2005. 8. 4 개정)
 법률 제7984호(2006. 9. 22 개정)
 법률 제8621호(2007. 8. 3 개정)

법률 제8852호 (2008. 2. 29 개정)
 법률 제9094호 (2008. 6. 5 개정)
 법률 제10151호(2010. 3. 22 개정)
 법률 제10219호(2010. 3. 31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제외)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 2 장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제9조(완공검사)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3조(과징금 처분)

제 3 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제17조(예방규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9조(자체소방대)

제 4 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제21조(위험물의 운송)

제 5 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22조(출입·검사 등)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제26조(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27조(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제 6 장 보칙

제28조(안전교육)
 제29조(청문)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1조(수수료 등)
 제32조(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 7 장 벌칙

제33조(벌칙) 내지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

부칙 <제6896호, 2003. 5. 29>

제1조(시행일)
 제2조(종전의 소방법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군용위험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이 법에 있어 위험물에 대한 규제방식

이 법에 있어서 위험물에 대한 규제방식을 일반적으로 개괄하면 사람에 대한 인적 통제와 기타 위험물시설 등 물적 통제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위험물의 수량에 대한 규제·장소에 대한 규제·취급에 관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규제는 각각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 예컨대 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장소 또는 거리기준을 배제하는 판매취급소 등을 볼 때 각각의 통제방식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동시에 상호보완 또는 통제기능이 혼합되어 있다할 것이다.

가. 사람에 대한 규제를 통한 위험물안전의 확보

위험물은 그 속성상 사람의 생활편의 등에 이용하기위해 만들어진 물질이라 할 수 있으며 위험물의 안전은 위험물시설의 설치당시의 구조적인 안전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관리·취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바로 사람에 대한 관리의 필요를 말한다.

이 법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안전관리자·자체소방조직 등의 규정을 두어 위험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위험성을 통제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 사람에 의한 위험물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식을 인적관리라고 하며 이와 같은 인적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자체소방조직을 들 수 있다.

나. 위험물에 대한 물리적인 시설규제

위험물에 있어서 물리적인 규제는 가장 일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법은 ‘제조소등’이라는 복합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시저장취급·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 등에 대한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 수량통제에 의한 간접규제

위험물의 안전관리적인 측면에서 위험물의 양에 대한 통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정수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 위험물을 허가 할 때 허가량에 대한 규제를 통해 위험

물의 양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각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도 양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주유취급소에 있어 지하에 저장하는 각각의 탱크에 기별 최대저장용량에 대한 통제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2) 공간적 차원의 간접 규제

이 법령에서 장소에 대한 통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조소등'이라는 장소에 관한 개념과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안전거리 규정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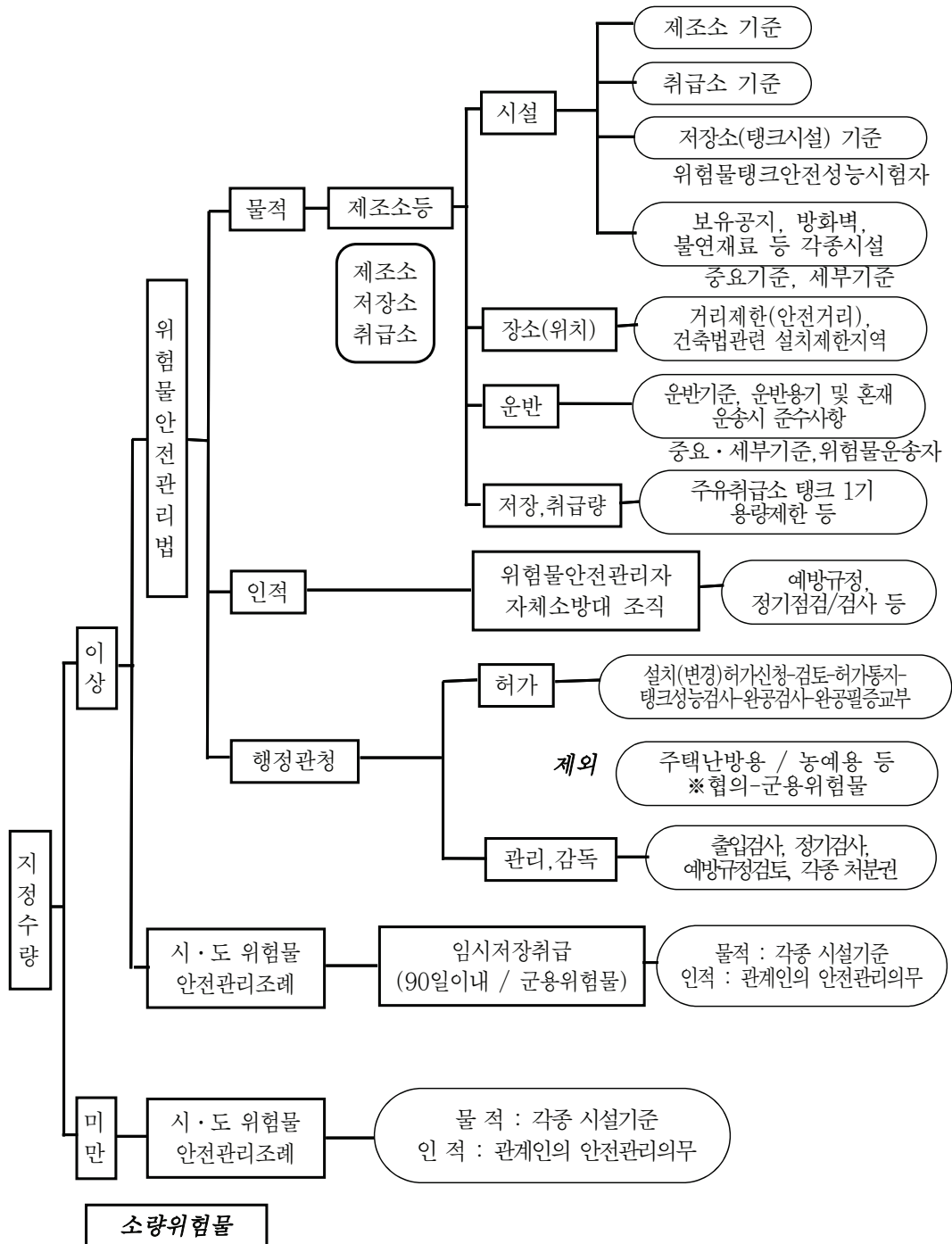
장소적 규제인 안전거리·보유공지 등은 위험물시설과 관련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시설을 보호하고, 외부의 위험요소로부터 위험물시설을 격리시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2차적·공간적인 안전확보의 개념이다.

이 외에도 장소적인 통제는 이 법령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서 제조소등에 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3) 위험물의 운반·저장 등에 관한 규제

위험물을 운반 할 때에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 등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이의 운반 및 운송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이 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행정체계



제2장 총 칙

법령의 총칙은 법령 전체에 관한 원칙적·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구성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법률 본칙의 앞부분에 두며 규정하는 내용으로는 목적규정·용어의 정의규정·해석규정·적용범위 등이 규정되고 이 외에 이념규정이나 책무규정 등을 두기도 한다.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총칙부분에 두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규정,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인 적용제외 규정, 일정량 이하의 위험물에 대한 사항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규정 및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목 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 의

목적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에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이것은 제명(題名)과 함께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며, 또한 그 법률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규정은 법률규정의 의미 및 존재이유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규적 해석의 기능을 지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함에 있다.

2. 목적과 수단

본 조항은 이 법이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수단으로 위험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각종 위해의 방지라는 1차적 목적과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2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3. 목적규정의 기능

가. 법률의 합헌성 확보

이 법의 목적규정은 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근본취지가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법 이하의 법률은 전체적으로 헌법의 유보하에 있는 합헌성이 담보된 법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합헌성에 근거한 본 조의 목적규정은 그 목적인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 유보된 법률

본 조의 목적규정은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 규정으로서 이는 동시에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방법의 적정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다. 즉, 헌법 제37조제2항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합치되는 법률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 법규 해석의 기능

본 조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률규정의 의미와 존재이유를 표현하고 있어 이하 이 법의 규정을 운용·해석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라.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목적규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중심적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위험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즉, 위험물의 판매와 같은 영업행위나 위험물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내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헌법 第37條

-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의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절 정 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의

정의규정이란 법률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특히 당해 법률에서 쓰이는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에 대하여 법률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 조의 정의규정은 이하 법률의 해석상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미리 한 곳에서 설명하여 줌으로써 복잡한 조문내용을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본 조 제2항의 경우는 이 법에서 자주 쓰이지는 아니하거나 다른 소방 관련법에서 정의된 용어를 이 법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은 입법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에 있어서는 이 법과 관련이 깊은 여타의 소방관련 법령의 정의를 준용함으로써 입법효율화를 기하고 소방관련 법률의 체계를 확보하기위해 규정한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가. 위험물⁵⁾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들 중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그 위험성이 확대되어 공공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만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시행령 [별표 1]의 품명란에 규정하는 물품으로서 동표에 의한 구분에 따라 동표의 성질란에 정하는 성상을 가진 것으로 제1류 부터 제6류 까지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에 있는 물품만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외에도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위험물질들이 존재하고 유통되고 있으나 그 위험성의 중대성 정도, 실제 위험상황에 노출빈도, 사회경제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제대상을 정하여 놓은 것이다.

5) 위험물에 대한 정의

○ 위험(Hazard)

- 사고 또는 손해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나 조건 및 상황
- 그 가연성이 평균치 이상인 물질이나 특정지역 또는 물질 그 자체의 인화성, 폭발성, 불안전성, 방사성, 독성 등으로 인해 위험한 물질
- 잠재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조건

○ 위험물질(Hazardous Material)

- 물질 그 자체의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산화성, 자극성, 기타 해로운 특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위험물(Hazardous Substance)

- 정상시의 취급이나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일반적인 위험물의 성질로는 독성, 부식성, 자극제, 강력한 증감제, 고인화성, 인화성, 가연성, 열이나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 등이다

-- 출처 : 방재용어사전/한국화재보험협회 --

나. 지정수량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이 있는 위험물질의 고유한 위험성에 비추어 당해 위험물질을 이 법령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제하고 규제하는 최소의 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물로 지정되었다하여 모든 양의 위험물을 법적·행정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위험물의 이용성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임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하지 않음은 위험물의 위험성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라 할 수 있다.

이에 각각의 위험물의 고유한 위험성과 이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두고 그 기준의 이상이면 이 법령에 따른 각종 통제를, 그 기준 미만이면 비록 위험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양과 속성에 비추어 이 법령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도 모든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시·도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지정수량은

- 이 법령에 따른 소방행정이 적용되는 최소의 위험물의 양이며
- 각각의 위험물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기준이기도 하다.

다. 제조소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위험물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여 비 위험물품을 제조하는 등)는 제조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비 위험물을 사용하더라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경우에는 제조소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제조과정에서 원료(Input)가 되는 물질이 위험물이건 위험물이 아닌건 간에 일정한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산물(Output)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동 제조시설을 제조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상 즉,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대상(주택난방용 저장소 또는 취급소)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에 간주되는 대상(군용위험물 시설)도 이 법령에서 말하는 제조소는 물론, 저장소와 취급소의 개념에도 포함된다.

라. 저장소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저장소란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고 이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며 저장시설에는 전체 건물 내 또는 외부에 저장하는 시설과 위험물을 탱크에 담아서 저장하는 시설 및 지하암반에 저장하는 시설 등이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로 구분된다.

마. 취급소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이며 저장취급소는 현행법에서는 삭제되었다. 각각의 취급소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제시하고 있다.

바. 제조소등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약칭(略稱)⁶⁾하는 것으로 이 법에서 위험물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한 ‘허가 면제대상’과 ‘군용위험물로서 협의로써 허가에 간주되는 대상’도 ‘제조소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각각의 목적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만을 ‘제조소등’이라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다면 허가를 면제받은 주택난방용 저장소 또는 취급소나 협의로써 허가에 간주되는 군용위험물 시설의 관계인도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의 준수나 제14조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 등이다.

6) 약칭 : 법문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용어를 활용하는 법제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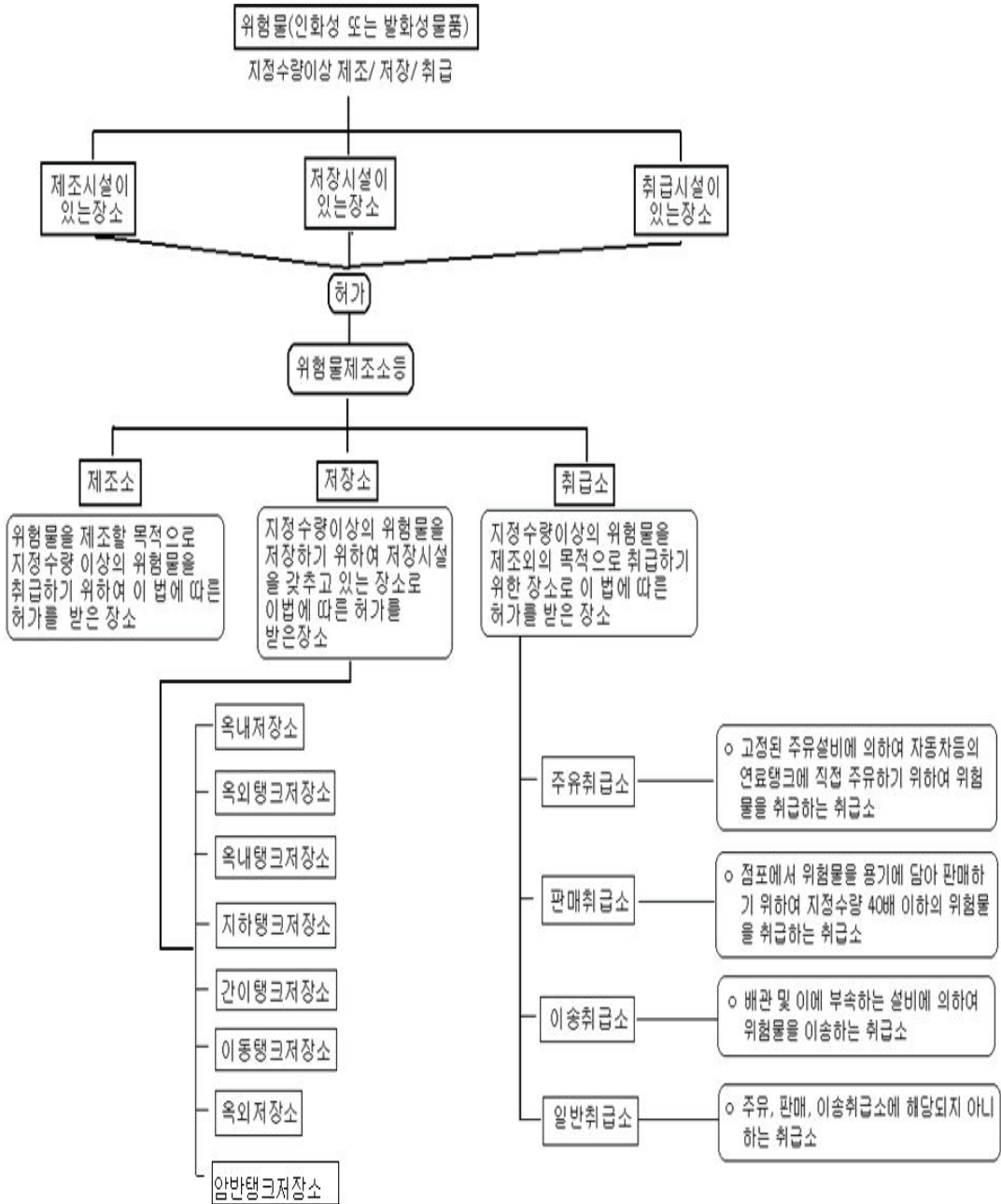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
(시행령 별표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 저장소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 저장소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옥외저장소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 저장소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시행령 별표3)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 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	주유 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 취급소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 취급소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일반 취급소

□ 제조소등의 개관



제3절 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는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의 경우, 이들의 안전을 관할하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 받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를 피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의 달성과 피 규제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다. 따라서 항공기, 선박, 철도 또는 궤도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저장, 취급 또는 운반은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선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다만,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 운항, 항해, 운행을 위하여 자체 연료탱크에 주유하거나 위험물을 적재하기 위한 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적용된다.

제4절 지정수량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은 그 성질상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있는 바, 각각의 위험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일정수량 이상에 대하여서는 ‘지정수량’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토록 하고, 위험성은 있으나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이 적은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에 대해서도 이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인하여 과도한 규제 또는 제한으로 위험물 이용·사용상의 장애를 배제토록 하는 한편,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더라도 위험물질이라는 본질적 특성상 일정한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바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보다는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도의 위험물안전관리조례로 규정토록 함으로써 상대적 규제의 완화와 이용 상에 있어서 현실성을

조화하고자 함에 본 조의 취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험물의 규제는 저장·취급 규제와 운반 규제로 대별되며, 위험물의 저장·취급 규제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양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와 시·도 조례에 의한 규제로 나누어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시·도 조례에 의해 규제를 받고,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위험물의 운반은 위험물의 양에 관계없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제를 받는다.

제5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1. 의의

본 조는 위험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 등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령 전체에 있어서 물적 통제의 핵심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은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전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저장은 반드시 저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제조소·취급소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취급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유의할 점은 저장소에서의 취급이라 함은 포괄적 의미의 취급이 아니라 저장을 위한 극히 제한적 취급을 의미한다.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에 더하여 위험물을 다루는 행위도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에는 위험물의 성질과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다루도록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저장·취급기준은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요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하고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장소

가. 위험물의 저장·취급

이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반드시 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위험물의 저장은 반드시 저장소에서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소, 취급소에서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의 제조소, 취급소의 부속시설로 존재하던 저장시설은 별도의 위험물저장소로 분리되었다.

나.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이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은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그 필요에 따라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것을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이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소는 지정수량이상이지만 허가대상이 아니고 관할소방서장에게 승인신청대상이며 이 시설에 대한 기준은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험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외규정을 둔 것은 임시저장·취급대상이 고정하여 영구히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임시로 저장하는 곳인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위험물의 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규정은 위험물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령이 요구하는 필요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9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그 임시사용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반복승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90일이 초과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승인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다. 군사목적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이 법 제7조에서는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에서는 군사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의 경우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위험물의 사용상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러한 군사목적상 사용하는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은 군 조직체의 특성상 일반적인 위험물제조소등에 비하여 관리상의 안전성은 높으나, 위험물의 높은 이동성 및 유지관리상 군협조의 필요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새롭게 분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이러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3.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가. 중요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을 말하며 직접적으로 위험물의 위해성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기준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6조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세부기준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을 말하며 이러한 ‘세부기준’도 ‘중요기준’과 마찬가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기준 위반시의 벌칙은 중요기준 위반과는 달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제2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4.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한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제28조 내지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내용은 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준과 해당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설치기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의 적용특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 규칙의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부터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기준’에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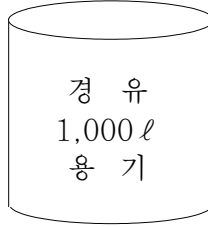
5. 지정수량의 배수산정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의 저장·취급량을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값의 합이 전체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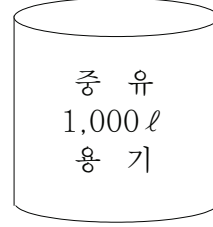
〈계산 예〉 하나의 옥내저장소 내에 다음과 같이 저장하는 경우



(=5배)



(=1배)



(=0.5배)

- 휘발유 ⇒ 제4류 제1석유류 : 지정수량 200 ℓ (수용성은 400)
 - 경 유 ⇒ 제4류 제2석유류 : 지정수량 1,000 ℓ (수용성은 2,000)
 - 중 유 ⇒ 제4류 제3석유류 : 지정수량 2,000 ℓ (수용성은 4,000)
- ⇒ 지정수량의 배수 : $1,000/200 + 1,000/1,000 + 1,000/2,000 = 6.5$ 배
- ※ 저장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값의 합이 1 미만이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시·도 조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됨

제 3 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이 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제조소등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험물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허가제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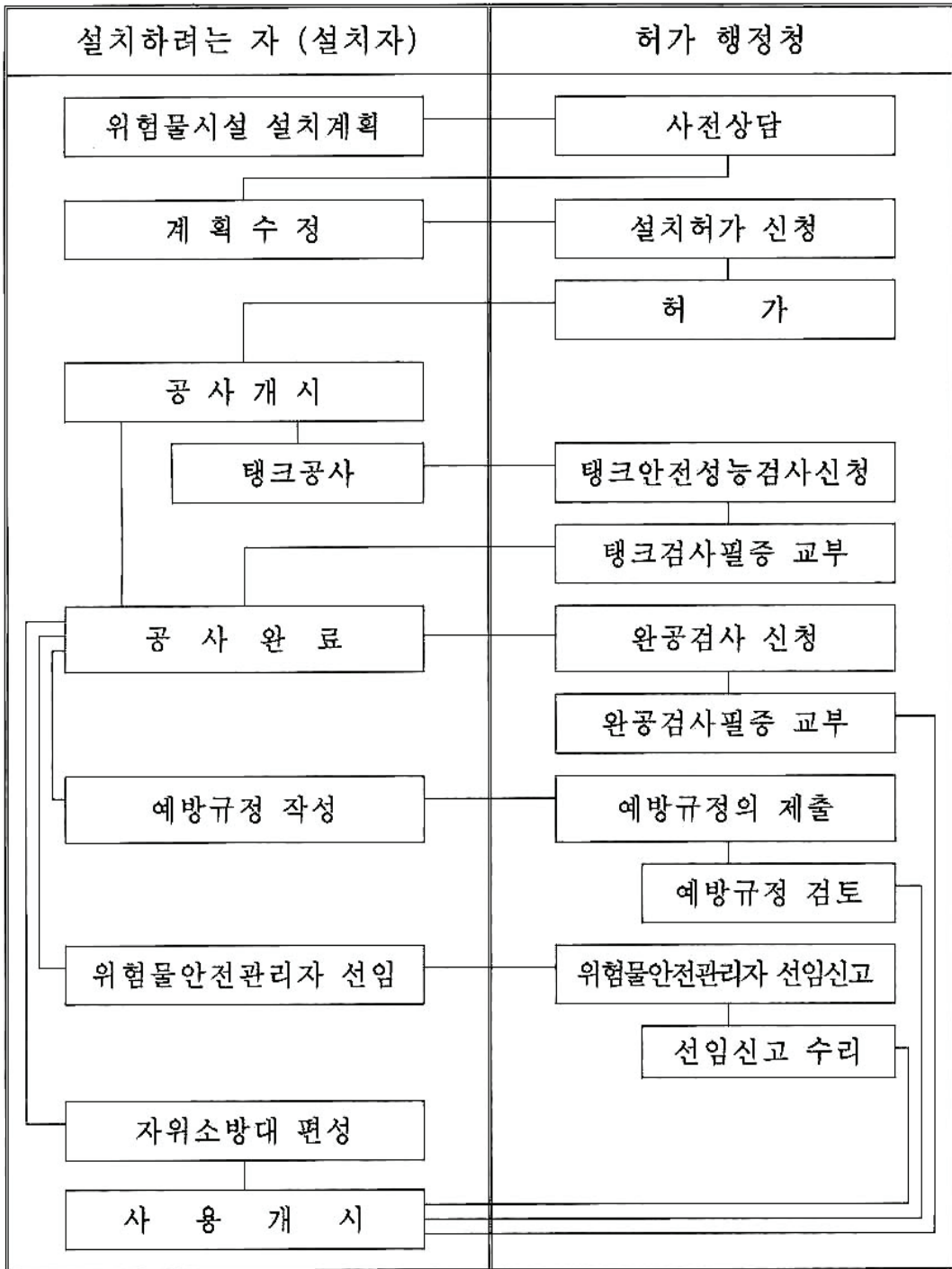
허가제란 국가가 사회·경제활동을 규제 또는 조정하기 위한 행정제도를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위험물을 제조·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각종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허가를 하는 취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장의 내용(제6조 내지 제13조)을 다룬다. 즉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사항, 위험물 탱크의 안전성능검사, 설치·변경 공사를 마친 때에 받아야하는 완공검사,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이 그것인데, 위험물시설에 대한 물적 통제의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 본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의 소방상 위해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위험물의 적정 관리·감독이 위험물의 누출·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환경안전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도 있다.

이 외에 군용위험물 시설 등에 대한 특례와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및 이 법령과 법령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에 적용되는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과징금처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위험물 설치계획에서 사용개시까지의 흐름



제1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1. 의의

위험물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용상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질임과 동시에 그 성질상 화재·폭발 및 누출의 위험성이 많은 관계로 그 사용의 효용성과 소방상 안전이라는 일정한 합리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본 조는 이러한 위험물에 대한 소방상의 안전 확보를 주로 하면서 그 사용상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있어서 허가제를 두어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허가란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본 조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를 법률상 제한하고 이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및 위해 방지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제한을 해제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위험물로부터의 위해 방지라는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제조소등의 허가 와 타 법령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에 있어서는 원칙상으로는 위험물 제조소등이 이 법령에 적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정비가 있었는데 ‘세녹스’와 같은 연료첨가제의 경우가 그 예이다.

종래 소방법에 의하면 주유취급소의 시설이 적합하면 소방법상 주유취급소의 허가를 할 수 있지만 석유사업법상의 규정에 맞지 않으면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없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불법연료첨가제”와 관련하여 법적 정비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취급소의 구분에서 종래의 석유사업법 제26조7)의 규정(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본 법에 의한 취급시설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주유취급소에서 이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할 수 없다.

제조소등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외에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환경관련법 등 여러 법령과 관련되어 있어 위험물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타 법령까지의 광범위한 검토를 통하여 제조소등이 여타의 법령에도 적합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8).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시험·연구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목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연료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4.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

- [1] 주유소 설치허가권자는 주유소 설치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2] 주유소 설치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는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석유사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의 고시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도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석유사업법령이 건축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없다.

또한 제조소등이 완공되고 난 후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개·보수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예컨대 지하탱크저장시설의 경우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추후 검사를 통하여 발견이 어렵고 시정 조치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재시공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위험물의 불안전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허가시 설계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지도를 통하여 완공된 제조소등이 적법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⁹⁾.

3. 설치허가

가. 신청서 제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포함)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첨부서류(규칙 제6조)

1)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V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9)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바)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 2) 당해 제조소등에 관계된 구조설비명세표
 - 3) 소화설비(소화기구 제외)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 6) 암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암반탱크의 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 7)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액체위험물탱크를 말한다)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 8)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한다.)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해상탱크의 본체 및 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 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규칙 별표 1에 정한 서류
 - 10) 「소방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전자정부법」 00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영 제6조)

-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2) 당해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기술원 기술검토 여부확인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사항

4. 변경허가

변경허가란 변경하려는 사항이 중요하거나 그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행정청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있어서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허가를 득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¹⁰⁾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 변경토록 하는 제도로써, 무분별한 위험물 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시설 등의 변경은 당해 장소 전체의 소방상 위험성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이때에도 그 위험정도에 따라 위해방지를 위하여 허가라는 사전절차를 두어 적정 통제하기 위함이다.

변경허가를 득한 후에 변경시설을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 법 제9조에서 그 변경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허가 - 시공 - 완공검사에 이르는 일련의 안전을 적정 확보하고 있다.

가.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할 서류(규칙 제7조)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 2)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10) 1. 위치의 변경이라 함은 허가 받은 제조소등의 시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구조의 변경이라 함은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위험물탱크저장 시설의 형태를 바꾸거나 그 주요구조부를 교체하여 고치는 것을 말한다.
3. 설비의 변경이라 함은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조소등의 건축물, 공작물 또는 위험물탱크저장시설에 부착된 시설의 형태를 바꾸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 3) 제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 4)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 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변경허가 사항(규칙 제8조)

본 조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각종 행위는 이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의2에서 각 제조소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 4 XII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카. 별표 4 XII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타. 별표 4 XII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파. 별표 4 XII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체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하. 별표 4 XII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거. 별표 4 XII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러.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2. 옥내 저장소	<p>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다. 별표 5 Ⅷ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별표 5 Ⅷ제4호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마.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바.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3. 옥외탱크 저장소	<p>가.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다. 별표 6 Ⅱ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 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별표 6 Ⅵ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사. 방유제(간막이 독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아. 옥외저장탱크의 밀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자.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옥외저장탱크의 밀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카. 옥외저장탱크의 에놀러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타. 옥외저장탱크의 에놀러판 또는 밀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길이가 300mm를 초과하는 경</p>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우에 한한다)</p> <p>파. 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p> <p>하.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p> <p>거. 별표 6 XI제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너. 별표 6 XI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p> <p>더. 별표 6 XI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러. 별표 6 XI제3호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머.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p> <p>버.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p> <p>서.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p> <p>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4. 옥내탱크 저장소	<p>가.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p> <p>나.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p> <p>다.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p> <p>라. 옥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마.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p> <p>바.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사.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아.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자. 별표 7 II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냉각장치·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p> <p>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5. 지하탱크 저장소</p>	<p>가.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다. 지하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사.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 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아.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자. 별표 8 IV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6. 간이탱크 저장소</p>	<p>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p>
<p>7. 이동탱크 저장소</p>	<p>가.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10 IV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p>
<p>8. 옥외 저장소</p>	<p>가.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별표 11 III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다.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9. 암반탱크 저장소</p>	<p>가.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나.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다. 배수시설·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라.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마.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p>
<p>10. 주유 취급소</p>	<p>가.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3)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나.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마.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바.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p>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아. 별표 13 V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자. 별표 13 XVI에 따른 개질장치(改質裝置), 압축기(壓縮機), 충전설비, 축압기(蓄壓器) 또는 수입설비(受入設備)를 신설하는 경우 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1. 판매취급소	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2. 이송취급소	가.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다.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누설확산방지조치·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마. 주입구·토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바.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검토사항(영 제6조 및 규칙 제7조)

-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2) 당해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 3)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대한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 4) 변경허가의 신청에 있어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

5. 신고사항

본 조 제2항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사전(7일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그 사항이 법의 취지상 경미하거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한 사항인 관계로 사전에 신고토록 하여 제조소등에 있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나로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 통지행위로서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허가 및 신고제외 대상

가. 의 의

본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로 이 법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에서 저장 및 취급하여야 하나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허가 및 신고사항은 아니지만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령이 규정한 제조소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위험물 사용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각종 시설 기준에 적합토록 하여 위험물의 위해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되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그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나. 허가 및 신고제외 대상의 제조소등

-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2)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 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제2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 ①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 의

본 조는 군용시설의 제조소등에 대한 특례로서 법 제6조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시 허가가 아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용위험물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은 이 법 제5조와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군용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에 관한 규정이며 본 조는 임시저장 및 취급이 아닌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에 대한 규정이다.

본 조에서 특례를 두는 이유는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은 일반적인 위험물 제조소등에 비하여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법적인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위험물 또한 화재·폭발 및 누출 등 각종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바 이를 법령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협의절차를 두어 설치되는 제조소등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조에서 명확히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일반대상과 군용대상 위험물 시설의 특례 비교

구 분	일 반 대 상	군 용 대 상	기 타
제조소등의 설치, 변경	소방서장 허가	설계도등 소방서장에게 제출 → 심사 후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대상의 경과규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군용제조소등은 이 법 시행 후 6월이내에 당해 제조소등의 현황을 군부대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할 경우 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대상으로 양성화
탱크안전 성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시험 - 소방서 - 탱크성능시험자 - 기술원 	자체검사 후 결과서 제출	
완공검사	소방서장	자체실시 후 결과서 제출	
임시저장·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조례에서규정 (관할소방서장승인) ○ 기간 : 90일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조례에서규정 ○ 기간제한 없음 	

3.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시 특례 절차(영 제7조)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서류¹¹⁾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 자체실시 후 통보사항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법 제8

1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설치허가 신청서류) 및 제7조(변경허가 신청서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함.

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규칙 제11조)이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가.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 나.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완공검사의 결과
- 라.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 마. 예방규정(영 제1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 한한다)

제3절 탱크안전성능검사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 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의의

탱크안전성능검사라 함은 위험물저장탱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의 종류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된다.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인 탱크의 성능에 대한 검사는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규제적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가장 1차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타의 모든 안전사항들이 무의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위험물 탱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의 허가를 득한 자가 위험물 탱크를 설치하거나 탱크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도 당해 탱크의 안전성능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탱크안전성능검사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으로 탱크안전성능시험이 있다.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위 법상 특정되어 있으며, 탱크의 안전성능을 확인하는 의미로서 탱크안전성능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다만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탱크안전성능시험은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2. 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탱크저장시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해당이 되는 탱크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검사의 내용은 다음 표 [시행령 별표 4] 와 같다.

구 분	검 사 내 용
1. 기초·지반검사	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중 나목 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충수수압 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용접부 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4. 암반탱크 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탱크안전성능 시험기관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다. 그러나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영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해 소방서장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성능시험을 받은 경우 일부에 대해 당해 시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하는 자는 규칙 별지20호서식의 신청서를 소방서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탱크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위탁규정에 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탱크는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압반탱크,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 탱크 중 이중벽탱크이다.

4.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의 구분과 검사신청시기

가. 기초·지반검사

- 1) 내용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2) 검사 신청시기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3) 검사결과 : 검사결과 검사신청자에게 통지(서면)
- 4) 해당탱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나. 총수·수압검사

- 1) 내용 : 위험물탱크의 누설·변형에 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2) 검사 신청시기 :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기타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3) 검사결과 : 신청자에게 탱크검사필증교부
- 4) 해당탱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12)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13)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용접부검사

- 1) 내용 : 위험물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2) 검사 신청시기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개시 전
- 3) 검사결과 : 신청자에게 탱크검사필증교부
- 4) 해당탱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라. 암반탱크검사

- 1) 내용 : 암반탱크의 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2) 검사 신청시기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3) 검사결과 : 검사결과 검사신청자에게 통지(서면)
- 4) 해당탱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 ①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용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절 완공검사

제9조(완공검사)

-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의의

완공검사란 당해 제조소등이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할행정기관인 시·도지사가 확인·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당해 공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동일한 제도이며 또한 건축법에 있어서의 사용승인제도¹⁴⁾와 유사하다.

본 조에서의 완공검사는 설치되는 당해 제조소등의 적법·적정여부의 확인 외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14)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완공검사는 위험물에 있어서 인적인 통제(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등)를 제외한 물적 통제의 마지막 확인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험물 시설 등은 설치시에 적법·적정하게 설치하여 두면 그 이후에는 달리 위반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허가시 및 완공검사시에 당해 시설의 적정·여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지하시설의 경우에는 지하에 묻혀버리면 완공검사시에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완공검사 전에 중간지도 등을 통하여 탱크가 지하에 묻히기 전에 지하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완공검사의 예외

본 조 제1항에서는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또는 기존의 제조소등에 있어 변경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공검사 확인, 즉 완공검사 후 적합 판정이 있어야만 당해 제조소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항의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변경허가의 경우 가사용 승인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존의 제조소등에 있어서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제2항은 부분완공검사를 인정하여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있다.

3. 완공검사의 신청(영 제10조 및 규칙 제19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¹⁵⁾ 또는 제23호서식¹⁶⁾에 아래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완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15)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부, 부분) 완공검사신청서

16) 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17)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완공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완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규칙 제19조)

-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나. 완공검사 신청시기

완공검사는 원칙적으로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각각의 제조소등마다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몇몇 제조소등은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완공검사의 행정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다음과 같은 완공검사 신청시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2)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완공검사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 3) 이송취급소에 대한 완공검사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에 시설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에 대한 검사의 신청은 매설하기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 4) 다음의 위험물시설 중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기에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17)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다. 완공검사 신청절차

1)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제조소등 완공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신청(완공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첨부) → 검사실시 → 완공검사필증 교부(신청인에게) → 완공검사결과서 송부

2) 일반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완공검사

○ 제조소등 완공 → 소방서장에게 신청(완공검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첨부) → 검사실시 → 완공검사필증 교부

제5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허가는 행정법상 대물적 허가¹⁸⁾에 해당하여 매매, 상속 등 대상물의 권리이전이 비교적 자유롭다. 제조소등의 지위승계라 함은 제조소등의 설치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최초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설치자로서 그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자 및 허가청의 행정행위 대상, 즉 「행정행위 객체」로서의 지위를 이어 받는 것을 말한다. 재산적 가치면에서 투자와 거래의 대상인 제조소등은 자본주의의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그 권리가 이전되면서 지위승계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제조소등의 허가는 행정법상 대물적 허가에 해당되어 행정행위 효과는 위험물시설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인수 또는 양수한 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양도인의 중요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¹⁹⁾ 지위승계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거래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는 것으로서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지위승계의 신고는 전형적인 자기완결적 신고²⁰⁾로서 신고행위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신청과 다른 의미이며,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통보와도 구별된다. 지위승계 신고는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에 도달한 시점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고 따로 행정청의 수리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2. 지위승계 원인 및 요건

이 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 지위승계의 원인 및 요건으로서 설치자의 사망, 양도, 인도, 법인의 합병,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열거된 사항은 지위승계의 원인 및 요건으로서 대표적인 것들이며, 보다 많은 지위승계의 원인 및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망과 유사한 인정

18) 對物的許可 : 물건의 상태, 내용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으로써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다.

19) 判【79누190(1970.10.30.大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20) 장태주, 행정법, 현암사, 425면 : 자기완결적 신고란 특정의 사실·법률관계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단순히 알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보통의 신고(예:혼인신고, 사망신고, 출생신고, 건축신고 등)

사망, 실종선고, 유언에 의한 증여,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 재판에 의한 소유권 변동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지위승계의 원인 및 요건은 바로 소유권 이전 또는 점유이전이라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말한다. 그것이 명칭이야 어떠하던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점유이전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면 제조소등의 설치자로서의 지위도 승계된다는 것이다.

가. 설치자의 사망(死亡)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조소등의 설치자로서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곧 바로 승계된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여부 및 상속권자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자의 사망과 동시에 지위승계는 확정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유증²¹⁾, 인정사망²²⁾, 실종선고²³⁾ 등 사망 유사개념들도 사망과 동일한 지위승계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 양도(讓渡)

제조소등의 양도란 매매, 증여 등 민법상 채권계약에 의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며, 제조소등의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양도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 재산 따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지만 뒤에 언급되는 인도(引渡)와 구별하기 위해 민법상 채권계약에 의한 제조소등의 권리이전을 양도에 의한 지위승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만 이전되고 제조소등의 실질적 지배권(설치자의 지위)은 전소유자에게 남아 있는 경우는 지위승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²⁴⁾

다. 인도(引渡)

인도란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점유가 정당한 권리관계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계약의 존부에 관계없이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지위승계의 효과는 발생한다. 이는 양도와 같이 채권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위승계의 요건

21) 遺贈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22) 認定死亡 :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사망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의 신고가 곤란할 때 실익이 있다.

23) 失蹤宣告 :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사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24)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호) 제5조 제1항

을 많이 완화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보다 자유로운 지위승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빈번한 지위승계는 위험물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저해할 수 있고, 아울러 행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도를 사유로 한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양해각서 등에 제조소등의 설치자로서 지위승계에 관해 언급이 없거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지위승계합의서²⁵⁾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라. 법인의 합병(合併)

법인의 합병은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기업의 확장, 경영합리화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 합병에는 2개 이상의 법인이 통합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만들어지는 설립합병(신설합병)과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되는 흡수합병이 있다.

법인의 합병에 의해 설치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등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 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설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競買)

경매란 「민사집행법」에 의해 법원이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제조소등을 담보권실행을 위해 경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최고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낙찰자는 경매 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소등의 지위도 이때에 새로운 낙찰자(승계자)에게 승계된다.

실제 실무에서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 사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매제도의 특성상 전소유자와 낙찰자의 분쟁으로 인하여 낙찰자가 소유권은 있으나 점유권을 행사하지 못해 지위승계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경매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전소유자의 인도거부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승계인이 설치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정이 소멸한 날을 지위승계일로 보도록 하고 있다.²⁶⁾

바. 파산법²⁷⁾에 의한 환가(換價)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채무자 스스

25)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6)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호) 제5조 제2항 참조.

27) 채권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파산신청이 되면 법원이 심리를 하여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된다. 채무자에게 환가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변경하는 환가(換價)절차를 거치면서 소유권이 변경된다. 이때 그 환가 목적물이 위험물제조소등인 경우 설치자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면서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사. 압류재산(押留財産)의 매각(賣却)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각 개별법의 과세요건으로 인하여 징수 결정된 조세채권(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독촉절차를 거쳐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 절차에 이르게 된다. 체납처분 절차는 체납자의 재산(동산, 부동산, 채권 등)을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공매(경매, 입찰)절차를 압류재산을 매각하게 되는데 이 때에 그 목적물이 위험물제조소등인 경우 소유권의 변동이 있게 되므로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3. 지위승계 신고와 과태료 부과

가. 지위승계 신고의무자

- 1) 설치자의 사망 : 상속인
- 2) 양도, 인도 : 양수자 및 인수자
- 3) 법인의 합병 :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
- 4)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

지위승계 신고의 의무자는 행정행위의 객체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 지위승계 신고의무자는 의사능력이 요구되며, 신고행위의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자에 의한 신고가 인정될 수 있다. 우편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신고행위의 존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도달주의²⁸⁾가 원칙이다.

설치자의 사망으로 인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상속인이 승계인이 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개개인 모두가 의무자이지만 그 중 1인이 대표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28) 到達主義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 受信主義, 受領主義

나. 지위승계일

- 1) 사망에 의한 상속 : 사망일
- 2) 양도(매매, 증여, 교환 등) : 등기접수일
- 3) 인도(임대차, 사용대차, 점유이전) : 계약서상의 이전일 또는 의사표시로 이전을 합
의한 날(지위승계합의서)
- 4) 합병 : 등기접수일
- 5)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 대금완납일
- 6) 이동탱크저장소 : 자동차등록일

일반적으로 등기부등재가 곧 소유권의 이전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상식 때문에 실무에서 등기부등재일을 지위승계의 기준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상속, 경매, 판결, 환가, 압류 재산의 매각 등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민법 규정²⁹⁾에 의거 지위승계 시점이 사망일 또는 대금완납일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망에 의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슬픔과 장례절차 등으로 경황이 없고,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는 점, 한국인의 정서상 재산의 처분 및 등기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기간 내 지위승계 신고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 지위승계 신고기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지위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 처리하는 것 같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의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신고기한을 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로 명시하고 있다.

라. 과태료 부과

- 1) 부과권자 :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2) 지위승계신고 태만
 - 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 신고 : 30만원
 - 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1일 이후 신고 : 70만원
- 3)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미신고) : 200만원

29) 민법 제187조 본문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4) 허위로 신고한 경우 : 200만원

과태료 부과절차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를 발부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위법사항 증명할 자료(관련서류, 자인서 등)를 첨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적발보고를 한다. 과태료 징수결정과 부과처분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지위승계 사유 여하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상에 수차례 지위승계가 이루어져 지위승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위반한 사람 모두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실제로 지위승계 신고 태만으로 보아야 할지 미신고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인도에 의한 지위승계의 경우 제출된 사문서(계약서 또는 지위승계합의서 등)의 진의(眞意)여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4. 지위승계 절차

가. 구비서류

1) 지위승계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28호 서식)

2)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 사망에 의한 상속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

나) 양도 :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사본 등

다) 인도 : 계약서, 합의서, 지위승계합의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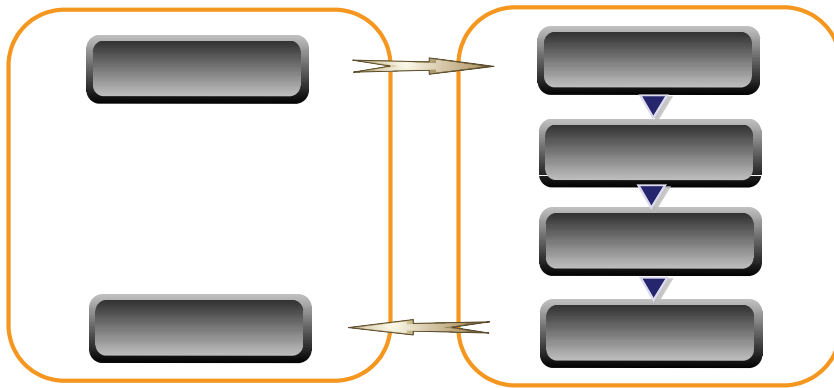
라)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 : 대금완납증명서, 납입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마) 합병 : 등기부등본, 양해각서 등

4) 지위승계합의서(설치자의 지위를 이전한다는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경우)

만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전 설치자의 비협조로 완공검사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미 지위승계에 의해 설치자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므로 승계자의 명의로 완공검사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나. 처리절차



※ 관계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등)지위승계사실 통보

다. 허가청의 직권에 의한 지위승계³⁰⁾

허가청은 지위승계 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 지위승계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의 신고 없이 직권으로 제조소등의 관리대장 및 허가대장을 정리할 수 있다.

라. 이동탱크저장소의 지위승계

1) 상치장소 없는 지위승계³¹⁾

- 가) 지위승계신고서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자에게 교부
- 나) 완공검사 전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수 없음을 통보
- 다) 완공검사필증은 상치장소를 확보하여 완공검사를 받은 후 교부

2) 상치장소 관할 외로 변경(구허가청 → 신허가청)³²⁾

- (가) 지위승계 신고를 먼저 이행
- (나) 신허가청이 수리한 경우 관할변경통지서에 의거 구허가청에 통보

30)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제2항

31)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제5항

32)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제6항

제6절 제조소등의 폐지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의

위험물제조소등은 그 장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질이 화재·폭발·유출 등 소방안전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환경 및 인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용도폐지란 더 이상 위험물시설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시설물을 철거 또는 효용성을 없애는 절차를 말한다. 즉 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칫 위험물시설이 방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유해성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용도폐지 절차에 대한 이행의무와 신고의무를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두고 있으며, 허가청은 관계인의 의무이행을 확인·감독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있다.

위험물시설의 용도를 폐지하면 위험물시설에 대한 허가효력이 상실하는 동시에 그 허가로 발생하였던 각종 의무로부터도 해방된다. 용도폐지는 일시적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가 아니라 장래 완전히 제조등으로써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용도폐지 신고의 법적 성격은 지위승계 신고와 마찬가지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행위 그 자체로 법적효과를 완성시키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2. 용도폐지 관계인

지위승계 의무자인 설치자란 개념과 달리 용도폐지 의무자는 관계인이다.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에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소등에 있어서 관리권, 소유권, 점유권 등 그 권원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권리관계를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용도폐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행위 객체로서 구체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애매

할 수가 있으므로 의무의 주체를 좀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관계인이라고 명시한 것은 의무이행 주체를 넓게 보아 책임전가 등으로 인하여 위험물 시설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관계인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으로 다수인 관계로 행정행위 객체로서 우선순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 없이 동일한 의무이행 책임이 있다면 오히려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또한 하나의 위반사항을 여러 명이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의 의무이행 우선순위는 그 위험물시설에 대한 관계인의 권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처분권과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소유자를 1차적 의무이행자로 보고, 관리자 및 점유자를 2차적 의무이행자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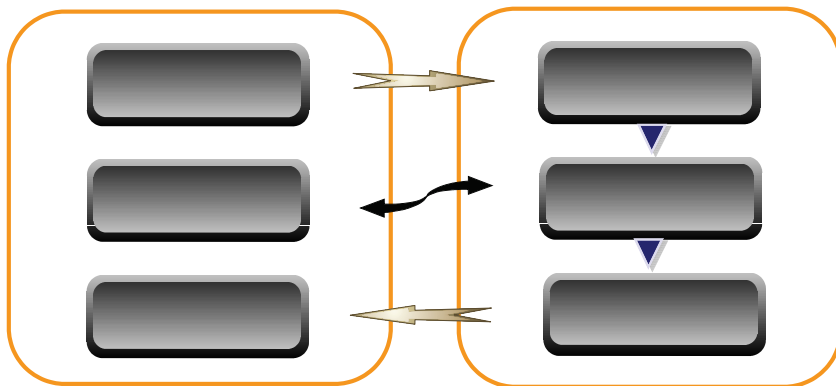
3. 용도폐지 절차

가. 구비서류

- 1)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서(붙임 참조)
- 2)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나. 신고기한 :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 용도폐지 절차



※ 관계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등) 용도폐지 사실 통보

라. 현장확인

용도폐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폐지된 위험물시설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 2)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해체·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용도폐지 된 현장을 확인할 때에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용도폐지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청의 직권으로 제조소등 관리대장 및 허가대장을 정리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가. 부과권자 :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용도폐지 신고 태만

- 1)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 신고 : 30만원
- 2)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1일 이후 신고 : 70만원

다.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미신고) : 200만원

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200만원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위승계에서와 같다.

5. 특수한 용도폐지

지위승계 절차와 용도폐지 절차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절차로 일괄하여 처리하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한다.

가.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용도폐지 → 용도폐지 신고기한 확인

나. 승계일로부터 30일 초과 용도폐지 → 지위승계 신고기한 및 용도폐지 신고기한 확인
만일 지위승계 신고기한과 용도폐지 신고기한 모두를 초과한 경우 각각의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제7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위반한 때

1. 의 의

이 법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완공검사 및 각종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위험물의 위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안전을 달성하고자하는 이 법의 목적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합법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조는 제조소등 관계인이 이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재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방법이 없을 때 행하는 가장 강력한 최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제재의 수단과 동시에 평상시에 위반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간접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본 조에서는 제재조치의 방법으로 위험물 허가의 취소(강학상의 개념으로는 철회임)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위험물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의 정지를 행정명령으로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허가의 취소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본 조에 의한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은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무분별한 처분으로 인한 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한 번 더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서는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³³⁾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소처분 사유로 열거된 8개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바, 그 구체적 기준은 이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야한다. 즉 취소처분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이다.

3. 사용 정지

처분으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보장 및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취소처분을 할 경우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한편, 사용정지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 제13조에서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다.

위반행위에 따른 사용정지의 기간은 이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가중하거나 경감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의 기준(규칙 별표 2)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이거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 할 수 있다.

나.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기간중에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행위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3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제 37조

- 다.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근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다시 한다.
- 마.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각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5.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법 제12조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6)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8)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제8절 과징금처분

제13조(과징금 처분)

- ① 시·도지사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의 의

과징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재금을 의미한다. 과징금은 본래 경제법상 의무위반자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행정 제재금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하는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나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 과하는 별이라 할 수 있다.

본 조 또한 제조소등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대규모 저유소 또는 정유소에 대한 사용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익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 사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종별·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액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기준은 이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의 부과 기준

- 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아래 나목과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규칙 별표3의 제2호 가목의 기준(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다.
- 다.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규칙 별표3의 제2호 나목의 기준(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과징금의 징수절차

과징금의 징수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징수결정, 납입고지, 수납 등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매각, 청산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제 4 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본 장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한 인적(人的)통제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은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물질이며 한 곳에 정지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하여 끊임없이 이용·사용되어지는 물질인 관계로 일차적인 시설적 안전확보와 함께 실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의 개념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교재의 제3장은 위험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이라는 저장시설 및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 장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을 실제로 저장 및 취급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물 안전의 항상성을 담보하여 위험성을 적정 통제하고자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장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제14조 내지 제19조)를 다룬다. 전체적으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한 시설유지·관리의무를 두고 있으며 위험물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제조소등을 관리토록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의 전반에 대한 제조소등의 내부규정인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설치된 위험물 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및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이 갖추어야하는 자체소방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절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본 조는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관계인에 대한 안전 유지·관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제5조에서 위험물의 저장·취급은 제조소등에서 하도록 하고, 제6조에서 제조소등의 설치(변경)시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 설치를 마친 후 완공검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위험물의 시설과 물적인 구조안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설치된 위험물시설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의 의무를 둬으로써 적정·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험물 시설 등이 항상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소등 관계인은 위험유발자이기 때문에 원인유발자 책임원칙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각종 의무를 두고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관계인에 대한 이러한 의무규정은 이 법 전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을 적정 준수토록 하는 간접강제 기능과 이 법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다.

제2항은 제조소등에 있어서 각종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행정기관에게 수리, 개조 및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직접적인 위해방지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1항의 관계인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자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 ⑥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 ⑦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⑧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³⁴⁾으로 정한다.

34)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6] .

1. 의의

본 조는 제14조와 함께 위험물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은 그 성질상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그 취급은 고도의 주의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서 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피해가 크므로 위험물에 대한 유자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감독케 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며 위험물관련 사고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업무토록 하여 사고발생시의 적절 대처를 확보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제도’와 유사하나 위험물의 위험성에 비추어 방화관리제도보다는 한층 강화된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외에 가스, 전기 등의 안전관련법령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안전관리를 통하여 각종 위해를 미리 예방하고 나아가 위해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공공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본 조는 자격부여규정으로서 일정한 업무 또는 행위를 하거나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2.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

1) 위험물취급자격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취급자격자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나)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의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다른 법률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된 위험물시설(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이 당해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로서 법 제15조제8항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자

가) 요건

- (1)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나) 대리자 선임기간 : 30일 이하

다) 대리자 자격(규칙 제54조)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 (2)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나. 1인의 안전관리자의 중복선임(영 제12조)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제조소등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는 1인의 안전관리자만으로 다수의 제조소등을 관리함은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 이러한 안전관리상의 장애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당해 제조소등의 규모와 위치·거리 등을 감안하여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다.

-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

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
- 10개 이하의 압반탱크저장소
-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4)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그러나 다음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각의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 제조소
- 이송취급소
-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어진 일반 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3.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본 조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를 두고 있는바 신고의 의무는 위험물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위해성에 비추어 볼 때 관계인에 대한 신고의 부담을 주어 안전관리의 철저를 기한다는 점과 관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적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의 기한

- 1) 해임 또는 퇴직시 재 선임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 2) 선임, 해임 또는 퇴직시 신고 : 선임, 해임 또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해임신고하고,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하며,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한다. 이때의 기산일은 선임, 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이다.

나. 선임 등의 신고시 제출 서류(규칙 제53조)

-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및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 3) 위험물안전관리교육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 5)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경력자에 한한다)

4. 안전관리자의 책무(규칙 제55조)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령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절한 유지·관리
 - 마)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5. 안전관리대행기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민간자율의 취지와 함께 최근 들어 기업들이 핵심적 영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업무영역들을 이른바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다.

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자격(규칙 제57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35)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승인 등을 받은 법인

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규칙 제57조)

소방방재청장은 자격요건·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준

가) 기술인력

-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 기술인력은 위 사항에 정하는 것의 2이상의 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나) 시 설 : 바닥면적 33㎡ 이상의 전용 사무실

다) 장 비

- 절연저항계
- 접지저항 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3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 2의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신청절차·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한다.
 -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 가스농도측정기
- 토크렌치
- 안전밸브 시험기
- 두께측정기(1.5mm ~ 99.9mm)
-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 콘테이너)
- 정전기 전위측정기
- 진동시험기
- 표면온도계 (-10℃ ~ 300℃)
- 유량계, 압력계

2) 등록신청 및 처리

가) 등록신청자 :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나)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다) 첨부서류

-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보유 명세서

라) 제출처 : 소방방재청

마) 등록처리 : 자격요건·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보유현황이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기술자격
증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

3) 변경 및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휴업·재개업, 폐업
은 14일 전에 신고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35서식(전자문서 포함)]

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규칙 제58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 내지 3)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위 반 사 항	근거 법규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58조	지정 취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승인 등이 취소 된 때	제58조	지정 취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제58조	지정 취소		
4)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제58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지정 취소
5) 소방방재청장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 르지 아니하는 때	제58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지정 취소
6) 변경·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제58조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 취소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58조	경고	업무정지 90일	지정 취소

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규칙 제59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및 영 [별표 6] 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은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 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탱크시험자의 등록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 ① 시·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2006. 9. 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는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탱크시험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의의

위험물 시설에 있어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기에 대한 안전성은 가장 일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며 저장용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탱크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탱크안전시험을 하도록 하고, 또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업무인 검사 또는 점검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탱크의 안전을 확보 및 제조소등에 있어 관리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이다.

이 법 제8조는 위험물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소등에 설치되거나 설치된 탱크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는 제조소등에 있어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는 탱크안전시험 및 제조소등의 점검·검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2. 탱크시험자의 업무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탱크시험자의 업무범위는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탱크안전성능시험과 이 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 및 검사업무의 일부이다.

특히 제조소등에 있어서 탱크의 안전여부를 점검하는 비파괴시험 등은 관계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기술능력과 장비 등이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탱크시험자가 검사 또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등록기준(영 제14조 및 별표 7)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기술능력

1) 필수인력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1인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방사선투과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비파괴검사·자기탐상비파괴검사 및 침투탐상비파괴검사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1인 이상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누설비파괴검사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금속분야의 비파괴검사기능사 및 토목분야의 측량·지형공간정보 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나. 시 설 :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전용사무실

다. 장 비

- 1)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2) 기밀시험장비(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3) 수직·수평도 측정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등록신청 및 처리(규칙 제60조)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나.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다.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라.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 1부

마.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신청이 영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에 그 기술인력자가 당해 탱크시험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5. 등록사항 변경신고(규칙 제61조)

본 조는 등록된 탱크시험자가 등록된 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서 변경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적정여부의 확인 및 변경으로 인한 각종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감독권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간접적으로 탱크시험자에게 부담을 주어 관련업무의 적정기준 준수를 담보하고 있다.

변경사항의 신고는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증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나. 기술능력의 변경

-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다. 대표자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라.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6.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관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가 법률이 정한 일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여 이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제재의 수단과 동시에 평상시에 위반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간접적인 기능(일반 예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방법이 없을 때 내리는 가장 강력하며, 최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바 이는 바로 행정객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이므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며 처분시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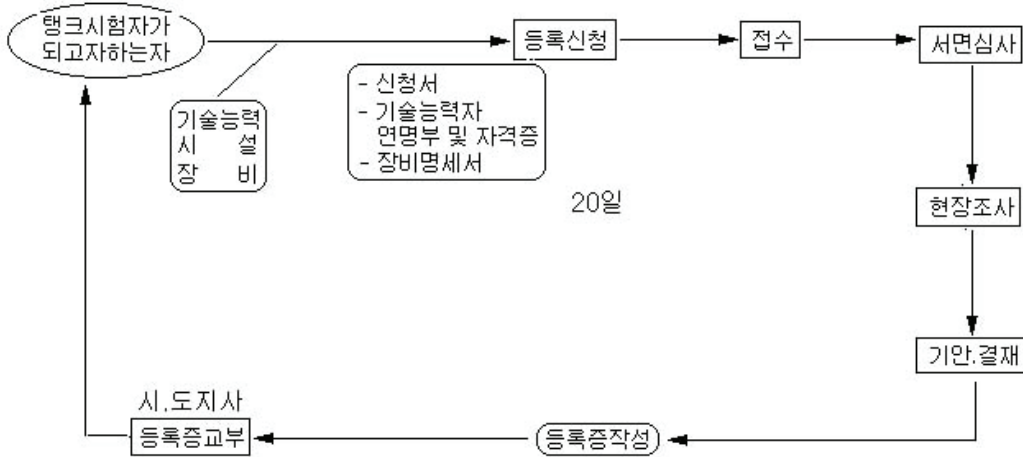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행정관련 법상 대부분의 취소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로 한 행위 즉 허가·인가·등록·면허·인증 등의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배제하는 것으로 강학상의 철회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본 조에서도 등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시·도지사의 본 조에 의한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은 명확하게 법률로써 규정하여 행정청의 무분별한 행정권의 행사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 법 제29조에서는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취소처분시 한 번 더 신중과 공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규칙 별표 2)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6조 제5항	등록취소		
(2) 법 제16조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5항	등록취소		
(3)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 제5항	등록취소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5항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등록취소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 제5항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등록취소

7. 탱크시험자 등록절차



제4절 예방규정

제17조(예방규정)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의

예방규정은 위험물시설에 있어서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과 운반방법 및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각종 위해의 예방과 유사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 당해 위험물 제조소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위해의 사전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 내부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방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있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감독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당해 위험물 제조소등에 합치되는 실질적인 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변경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반 모든 비상대응계획이 그러하듯이 준수되지 아니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비상계획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만 못하므로 예방규정의 준수 의무를 관계인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에게까지 두고 있어 실현가능성과 실질적인 예방규정이 되도록 담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물의 위해성으로 인한 당해 제조소등의 일차적인 안전, 나아가 주변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2.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영 제15조)

-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제조소
- 나.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옥외저장소
- 다.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옥내저장소
- 라.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 마. 암반탱크저장소
- 바. 이송취급소
- 사.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2)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규칙 제63조)

- 가.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나.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라.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마.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바.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사.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아. 위험물 취급 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자.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 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차.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카.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파.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의의

이 법은 제6조에서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제14조에서는 설치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유지·관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 관계인의 유지·관리업무의 적정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점검의 적정여부 및 유지관리상태의 확인 등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책임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험물 제조소의 시공-완공-사용-폐지 등 전반에 걸쳐서 일련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본 조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각종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와 점검의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위험물의 위해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이 평상시에도 항상 적정·유지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관할 소방행정기관에의 검사는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안전을 한 번 더 확보하여 2차, 3차의 안전장치를 두어 위험물의 위해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2. 정기점검

점검이라 함은 관계인이 제조소등에 대하여 이 법령이 정하는 각종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관계인 등에 의한 자체점검을 말한다.

가.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 (영 제16조)

- 1) 제4절의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2) 지하탱크저장소
- 3) 이동탱크저장소
-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나. 점검구분과 점검횟수

위의 정기점검 대상의 제조소등은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그 탱크 중 특정옥외탱크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것)의 탱크는 추가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점검구분	점검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내용	횟수
일반점검	○ 정기점검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자 ○ 안전관리대행기관, 탱크시험자(안전관리자의 입회) ○ 위험물운송자 (이동탱크저장소)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연 1회 이상
구조안전 점검	○ 일반점검 대상 중 100만 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입회) ※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내용에 대한 지식, 기능 및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한다.	○ 점검내용·방법상 기준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 8장)	○ 완공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2년 이내에 1회 이상 ○ 최근 정기검사 받은날로부터 11년(연장신청시는 13년)이내에 1회 이상

3. 정기검사

검사라 함은 관할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의 유지·관리의무 및 시설 등에 대한 적정·적법여부를 확인 검사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검사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기검사는 업무의 위탁규정(영 제22조)에 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가. 정기검사 대상 제조소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가 그 대상이며 이를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나. 정기검사의 시기(규칙 제70조)

- 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당해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다. 정기검사의 신청(규칙 제71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정기검사 신청서
- 2)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 3)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4) 완공검사필증 및 최근의 정기검사필증 사본
- 5) 밀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소방검정공사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밀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옆판·부속설비의 외관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정기검사의 방법 등(규칙 제72조)

- 1) 정기검사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구조안전점검시에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밀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옆판·부속설비의 외관 등의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

위 중 임의로 부위를 발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3)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제6절 자체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의의

자체소방대라 함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폭발 및 유출 등의 각종 위험물의 사고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조직을 말한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제조소등은 그 규모가 크며 또한 취급하고 있는 위험물이 성질상 화재 등 유사시 즉각적인 초동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발, 주변탱크의 연소 등 2차, 3차의 피해로 순식간에 전이될 수 있는 대상인 바, 당해 제조소등에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두어 유사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소방관서의 소방력이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공백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2.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영 제18조 및 규칙 제73조)

가. 제조소 :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나. 일반취급소 :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다음의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4) 유압장치, 유회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3. 자체소방대 편성기준(영 제18조 및 별표8)

자체소방대 편성에 필요한 화학소방차와 최소인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의 구분	화학 소방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규칙 제74조)

둘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위의 표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나. 화학소방차의 기준(규칙 제75조 및 별표23)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에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 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젠화합물 방사차	할로젠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할로젠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000kg 이상의 할로젠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제 5 장 위험물의 운반 등

위험물은 사용의 목적에 의한 물질인 관계로 일반적으로 정지 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이동성이 많다. 고정된 위험물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및 점검으로 그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지만 유동적이며 유통·이동되고 있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 장은 이러한 위험물의 운반·운송 등에 있어서의 시설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운송·유통에 따르는 사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여 위험물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절 위험물의 운반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 ② 소방방재청장은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의 운반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구역 내에서 위험물의 사용 또는 취급을 위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 조는 위험물의 운반에 대한 용기·적재 방법 및 운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물을 이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방지코자 하는 것이다.

이 법 제5조에서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저장 및 취급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본 조에서도 위험물의 운반 등과 관련하여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를 적정 준수토록 하고 있다. 운반에 있어 가장 일차적인 안전요소가 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제작 또는 수입할 경우 그 적정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위험물의 운반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제2절 위험물의 운송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녀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의의

위험물의 운송이란 운반보다는 장거리 이동이며, 양에 있어서도 많은 양을 각종 운송 장비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목적에 부합되게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

인 운송장비는 '이동탱크저장시설'이며, 이 시설은 이동탱크저장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의 운송은 주로 장거리인 관계로 전복과 같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운송 중 누출·화재 등은 소방상의 위해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의 환경상의 위해와 유독가스의 발생 등 불특정 다수인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위험물사고에 있어서의 조치는 당해 위험물의 성상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관계로 본 조는 먼저 운송하는 위험물에 있어서의 안전확보를 일차로 하고 나아가 사고 등의 발생시 적정조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격자 또는 위험물과 관련한 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운송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 또는 특정의 위험물을 운송할 때에는 위험물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하에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험물 운송자

가. 위험물 운송책임자(규칙 제52조)

- 1) 정의 : 위험물 운송에 있어서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하는 자
- 2) 자격요건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전자

- 1) 자격요건 :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2) 의무 : 위험물 운송시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휴대

다.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영 제19조)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들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하는 사항³⁶⁾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 소방관서 또는 관련 업체(비상대응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것
 - 나.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km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 다.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36)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 장소를 택하고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할 것
- 라. 위험물운송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 마.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 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당해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를 것. 다만,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감독 및 조치명령

모든 법은 그 실효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으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끊임없는 적절한 감독과 관리 및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합리적이며 비례적이고 단호한 시정조치 등이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법에서는 관할행정기관에 감독 및 조치명령권을 부여하고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법의 준수 및 의무이행의 부담을 가지도록 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위험물 제조소등 및 관련사항에 대한 각종 명령 및 처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및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 무허가위험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조치권,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위험물의 유출시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절 출입·검사 등

제22조(출입·검사 등)

-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 ②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위험물의 운송에 따른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에 승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의 의

출입·검사란 위험물과 관련한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취급 인정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사항에 대하여 이 법령에의 적법여부 및 안전관리 상태 등을 파악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위험요인의 제거와 법령위반 및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관련자료 등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위험물의 위험로부터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할 행정관청의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입·검사는 관할 행정관청이 화재예방상 안전을 도모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관련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작위하명-자료제출명령) 직접 대상물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행위(즉시강제) 및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의 일부를 수거하는(즉시강제) 등의 행정형식을 통하여 행하는 일련의 법 집행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출입·검사를 받게 되는 관계인의 입장과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정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이고 예정된 출입·검사라 할지라도 민원인에게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생산활

동에 유·무형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불이익과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갑작스런 방문이나 검사 등은 정당한 법집행과정이라도 관계인에게는 더욱 강한 부담을 줄 여지가 많은 만큼 방문횟수의 최소화와 불필요한 시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 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검사 제도’와 그 취지와 기능이 유사하며 이 법에서는 위험물과 관련된 사항이란 점에서, 물품을 수거하는 즉시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2. 출입·검사의 수단

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이는 소방검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소방상 관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명·자료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 1) 명령의 주체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2) 명령의 성격 : 행정상 작위하명
- 3) 명령의 객체 : 위험물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 및 탱크시험자
- 4) 명령의 요건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이때의 필요성은 명령권자 즉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재량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의 정도는 구체적이고 개연성에 있어 엄격히 강화된 필요성이 아닌 명령권자의 합리적인 판단 및 경험상에 비추어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본 조에서의 출입·검사 대상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장소” 라고 하여 인정이 되는 장소의 판단에 있어서는 합리성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다.

5) 보고 또는 자료제출 사항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상 필요한” 관계 자료를 말하며 이때 자료라 함은 당해 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상의 필요한 자료를 말하며 관계인의 하명에 대한 수인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료의 요청은 화재와 또는 진압대책과 관련한 사항이어야 한다.

나. 출입검사

출입·검사란 행정기관이 그 감독하에 있는 사업자 당해 법률의 집행에 관계있는 자 등에게 사업이나 영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 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상 필요한 때 관계 공무원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직접 출입하여 각종 사항을 검사·질문 및 필요한 물품을 수거함으로써 위험물과 관련한 화재 등의 각종 위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의 효율성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소방행정 활동을 말한다.

1) 출입검사의 제한

가) 시간적 제한

- 해당 장소의 공개 또는 근무 시간 내
- 주간(해뜨기 후부터 해지기 전)

예외 : 관계인의 승낙 또는 화재발생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공개시간이라 함은 영업시설의 경우는 영업의 종료·전시시설의 경우는 실제 전시 시간을 말하고, 유흥시설 등은 밤늦게 영업을 하므로 이때도 공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나) 개인주거에 있어서 제한

-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외 : 관계인의 승낙 또는 화재발생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출입검사와 물품수거

본 조는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검사 자체가 강제처분(행정상 즉시강제)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므로 이러한 강제처분인 출입검사를 할 때에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침해가 가는 방법을 선택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한 물품을 수거할 때에는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수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통보 또는 반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질 문

소방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의 주체가 관계 장소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설명을 구하는 행위로서 검사를 위한 보충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라. 출입·검사의 결과조치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입·검사자의 의무

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의무

이 때의 증표는 출입검사행위의 실체요건이 아니며 절차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출입검사 행위라도 유효한 행위가 된다. 하지만 증표 제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계인이 출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방해금지의 의무

다. 출입검사 수행시 업무상 알게된 비밀누설금지 의무

라.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승낙을 받을 의무

4. 이동탱크 운송자에 대한 강제처분

이 법이 제정되면서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 운송의 경우 화재 또는 사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이 도로상의 주행 중인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도로상의 운행 중인 위험물운송 차량에 대해서도 화재 등에 의한 위험물 폭발 또는 누출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물 운송차량을 일시 정지시켜서 위험물 취급자격 구비여부에 대해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2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 조는 제22조제5항의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검사와 함께 탱크시험자의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 및 적정업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에서 탱크시험자에 대한 자격부여규정을 둔 목적은 위험물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의 위험성을 가장 일차적으로 방호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과 제조소등의 정기검사 및 점검의 일부를 담당토록 하여 설치된 위험물의 안전관리·유지를 통하여 위험물의 위해로부터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일정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에서 당해 탱크시험자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감독상 필요할 경우 관할행정기관에서 부 적정함을 바로잡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탱크시험자의 적정업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적정이행을 담보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이 규정 외에도 이 법 제16조제6항에서는 탱크시험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제3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의의

이 법 제5조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토록 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함에 있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그러나 이 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된 허가면제 대상(주택난방용 및 농예용 등 / 아래 '2' 참조)은 여기서 말하는 무허가위험물로 보지 아니한다.

본 조는 이에 대한 조치권한을 마련함으로써 적정·적법하게 설치·유지·관리되지 아니하는 위험물 및 시설을 제거 하도록 하여 무허가위험물로 인한 각종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무허가위험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를 설치한 자
- 나.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

제4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에 있어서의 화재·폭발·누출 등은 당해 위험물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회·환경적인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은 필요시에 적절하게 관리 및 규제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화재나 각종 재난·재해현장과 위험

물의 사용이 결합되는 것은 유독가스의 발생, 위험물의 누출로 인한 피해범위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대형 위기상황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 및 제한처분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유지와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불가성 등을 요건으로 헌법과 행정법상의 목적수단의 비례원칙 등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26조(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는 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5조제3항은 제조소등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의 위반시 화재 발생 위험정도 및 당해 기준이 화재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중요 기준과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조소등 관계인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본 조는 이를 위반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록 함으로써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동탱크의 경우 이동성이 있는 저장소라는 특성상 ‘허가청’과 본 조에 의하여 처분을 한 ‘처분청’이 다른 경우가 많은 데 이때 이 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허가청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적정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명령을 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 명령에 관계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자, 상치장소 및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 위반내용
-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사항
- 그 밖에 명령을 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절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제27조(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제1항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 조는 제조소등 관계인에게 유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시 사고확대 방지 및 재해로의 확대 방지 등을 위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다. 유출된 위험물은 급속히 확산 또는 유증기 등을 통하여 위해성이 증대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2차 위험인 폭발 또는 대규모 재해로의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의 사고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신속·적정한 응급조치이다.

이러한 응급조치 및 사고수습의 일차적인 책임은 제조소등의 시설주 즉 관계인에게 있으며(자기책임원칙) 본 조는 이러한 관계인의 의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유사시 관계인의 위험회피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응급조치 및 필요조치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에 있어서 관계인의 응급조치 의무는 위해유발 시설의 관계인이라는 지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화재, 폭발, 유출 등의 위험물 사고 발생시 물리적으로 가장 근접하여 있는 사람이 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바 이들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조치의 신속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본 조의 제2항 통보의무는 소방기본법 제19조³⁷⁾와 유사한 규정으로 의무강제 규정이라기보다는 건전한 시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언급한 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37)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 7 장 보 칩

총칙이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실체 규정의 전제로서 그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총칙으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절차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법제상 보칙 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보칙 규정은 “별칙” 바로 앞부분에 두게 되는데, 장의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칙” 이라는 장을 둔다. 일반적으로 보칙에 규정되는 내용으로는, 보고의무(자료제출의 요청), 출입·검사 또는 조사, 청문, 행정심판·행정소송, 손실보상,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조정 등이 있다.

이 법에서는 제28조부터 제32조에 걸쳐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안전교육, 상대방의 법률적인 권한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코자하는 처분을 할 시에 거치도록 하는 청문, 적절한 업무의 분배 및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근거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일정의 업무를 한 금전적 대가로서의 수수료, 이 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있어 업무수행의 적법·적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안전교육

제28조(안전교육)

- ①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의 의

각종 위험물 유지·관리·저장·취급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일반 물품보다 세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일정수준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험물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업무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수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교육이수를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또한 교육대상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이 그 교육대상자의 자격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의 실시주체는 소방방재청장이다. 그러나 권한의 위탁 규정인 이 법 제30조 및 영 제22조에 의거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영 제20조)

가. 강습교육

- 1)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2)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나. 실무교육

-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3.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규칙 제78조)

가.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24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술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는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협회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³⁸⁾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4시간	신규 종사전	협회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16시간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	협회
	위험물운송자		신규종사후 3년마다 1회	협회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	기술원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 가. 협회의 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 5일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 나. 기술원 또는 협회는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 가. 강습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할 것
-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협회는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38)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4]

5. 기타

기술원 또는 협회는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시간,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청·접수,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교 육 과 목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 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험물운송 자 강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작동법 ○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 기준 	

제2절 청 문

제29조(청문)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1. 청문의 개요

가. 청문의 의의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청문절차는 재판절차에 준하는 정식행정절차에 해당되는 의견청취 절차의 하나이다. 이러한 청문은 사실요건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나. 청문주재자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고,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은 청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문주재자가 될 수 없는 제척사유 및 당사자등의 기피 신청권, 주재자 자신의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청문의 공개

청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청문의 경우 주로 당사자의 불법 위법한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의 실행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서는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등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여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2. 청문의 진행 절차

가. 청문의 진행

청문진행절차는 구두변론절차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청문주재자의 청문내용에 대한 설명과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제출, 질문에 의하여 진행된다.

당사자 등이 구두진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청문주재자는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의 제한, 질서교란자에 대한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청문을 계속할 경우 당사자등에게 청문계속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 후 계속할 수 있다.

나. 청문의 병합 분리

청문을 거쳐야 하는 수개의 처분이 유사하거나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 또는 병합된

청문 중에 수개의 사안에 별도의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 행정청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문을 병합 하거나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증거조사

증거조사란 청문주재자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인 감정인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문건·문서·장부등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라. 청문 조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실시한 후에 청문의 결과와 관련하여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청문의 종결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청문절차의 법적효과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먼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청문을 거칠 것이 규정되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판단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 청문의 여부는 행정청의 고유 판단영역에 해당되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처분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소방장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양(委讓)하는 것으로 권한의 위임을 받은 기관(受任機關)은 당해 행정관청의 보조기관·하급기관임이 통례이다. 이때 위임기관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잃고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하며 이는 법이 정하는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일종의 사무 재배분이므로 법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2. 업무의 위탁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수탁자에게 어느 정도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탁을 한 자와의 사이에는 신탁관계가 성립되며 일반적으로 객관성

과 경제적 능률성이 중시되는 분야 중 민간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탁을 주로 한다. 이러한 위탁도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바, 본 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위탁기관으로 하고 있다.

3. 권한의 위임사항(영 제2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 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 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장과의 협의
- 라.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암반탱크,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이중벽탱크의 안전성능검사 제외)
- 마.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는 제외)
- 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 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 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 차.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

4. 업무의 위탁(영 제22조)

-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압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이중벽 탱크

-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의 완공검사 (사용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증설 제외)
-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운반용기검사
-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나.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여야하는 안전교육 중에서 영 제20조제1호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제3호에 의한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등의 안전교육(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제4절 수수료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인·허가·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저장·취급의 승인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8.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10.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수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행정주체가 행정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하여 일정의 행정행위(이 법에서의 각종허가, 승인, 검사 등)를 함에 있어 그 직무에 대한 보상 또는 비용충당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요금” 을 말한다.

교육비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을시 그 교육에 상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본 조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에 대하여 금품의 수수(收受) 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상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위탁받은 업무의 적정이행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제 8 장 벌 칙

벌칙이란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 또는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一般統治權)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벌칙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본 장에서 다루는 이 법의 제7장 벌칙은 제33조부터 제3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3조 내지 제37조에서는 행정형벌인 징역, 금고 및 벌금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는 양벌규정을, 제39조에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1. 행정벌의 의의

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범’ 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범’ 또는 ‘행정범’은 행위자체는 본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상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벌의 종류

가. 행정형벌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상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과벌절차는 행사소송절차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절차 또는 통고처분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의 종류는 징역, 금고, 벌금이다.

나. 행정질서벌(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비행인 경우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예컨대 신고·보고·장부비치 등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함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과하여져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과·징수권자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있다.

2008.6.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에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부과요건의 엄격화·합리화

과태료의 부과요건으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함으로서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14세 미만자나 심신장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마련하였다.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으로서 과태료 소멸시효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2)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개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자진납부시에는 과태료를 20%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과태료의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3)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납부기간 경과 시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60개월간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방지를 위한 보완수단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과태료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3. 양벌규정

행정법규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자연인 외의 법인이나 개인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 한다.

이와 같이 양벌규정을 두는 이유는 실제로 법인 또는 개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을 처벌하여서는 실제로 그 법인 또는 개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 일정한 형벌을 가하는 양벌규정이 필요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 등이 이 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기능도 함께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의 근거가 새롭게 추가되었다.(2010.3.22개정)

4. 행정벌과 행정처분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행정벌이라는 동일한 제재의 성격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병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에 의한 취소·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행정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행정벌의 적용은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며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인 관계로 위반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해당 여부와 과태료처분 및 벌칙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하여야 한다.

5. 벌칙규정

제33조(벌칙)

-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2. 제6조제1항 전단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제6호·제36조제6호·제7호·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3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 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한다.
 -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9] 시행령 <개정 2005.5.26> <개정 2006.5.25> <개정 2006.9.28>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중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 조 문	과태료 금 액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승인기한(임시 저장 또는 취급 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2) 승인기한(임시 저장 또는 취급 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3)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3호	30 70 200 200

위 반 행 위	해당법 조 문	과태료 금 액
<p>라.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p> <p>(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p> <p>(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p> <p>(3) 허위로 신고한 자</p> <p>(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법 제39조 제1항제4호</p>	<p>30</p> <p>70</p> <p>200</p> <p>200</p>
<p>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p> <p>(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p> <p>(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p> <p>(3) 허위로 신고한 자</p> <p>(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법 제39조 제1항제5호</p>	<p>30</p> <p>70</p> <p>200</p> <p>200</p>
<p>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 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p> <p>(1)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p> <p>(2)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p> <p>(3) 허위로 신고한 자</p> <p>(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법 제39조 제1항제5호</p>	<p>30</p> <p>70</p> <p>200</p> <p>200</p>
<p>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p> <p>(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p> <p>(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p> <p>(3) 허위로 신고한 자</p> <p>(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법 제39조 제1항제6호</p>	<p>30</p> <p>70</p> <p>200</p> <p>200</p>

위 반 행 위	해당법 조 문	과태료 금 액
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7호	100
자.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 제1항제8호	50 100 200
차.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제9호	10
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 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 제1항제9호	50 100 200

제 9 장 부 칙 <제6894호, 2003. 5. 29>

부칙이란 법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의 총괄적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부칙은 본칙의 규정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행일·유효기간·적용례·경과조치 규정 등의 부분과 본칙의 규정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본칙의 규정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른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시행일

법률의 시행일이란 적법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효력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말한다.

법률의 시행은 시행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률을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이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기간을 두어야 하며, 또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때에는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의 시행일 즉 효력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은 제정하면서 다른 소방법령과 동일하게 법률의 시행에 따른 시간적인 여유를 1년으로 두어 하위법령의 정비에 따른 시간확보와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을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경과조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법률을 제·개정할 때 종전의 상태를 계속 존속시키거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법의 효력을 신법에서 존속시키거나 구법의 상태를 신법에서 용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법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에 일반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효력은 종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에도 미치며 종전의 상태와는 다른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종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던 행위가 새로